

담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예고

「담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5. 13.

담양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담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군복무 중인 담양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의 복지 향상 및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병역 이행의 숭고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상해보험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상해보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5. 5. 13. ~ 5. 18.(5일간)

5.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조례안 : 붙임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례안	담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2. 의견	관련조문	의견
3. 기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5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담양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의 복지 향상 및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담양군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담양군이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담양군 청년의 군복무 기간 상해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담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포함)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